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- 274호

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외국어 에디터 채용 재공고

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)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공무원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가. 채용인원 : 현지실사 보조요원(영문 에디터) 1명

나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채용분야	채용자격기준
영문 에디터 (나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채용예정분야(해당언어 포함)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자○ 해당 언어권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○ 채용예정분야(해당언어 포함)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○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○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<국제회의 등에서 토론,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> * 관련학과 : 영어교육학, 영문학 등 이와 유사한 과

○ 응시 자격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 우대사항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- 장애인(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, 부양의무자, 차상위 계층 및 개별가구
 - * 저소득층의 범위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다. 담당업무

-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관련 통역 및 각종 서한(영문) 작성
-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업무 보조
- 해외정보 수집, 모니터링 및 통계 업무 보조
- 기타 현지실사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

2. 보수 및 근무조건

- 근무시간 : 공무원에 준함 (09:00~18:00, 주 5일 근무, 공휴일 제외)
 - *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('18.7.1. 시행)
- 월보수액 : 외국어 에디터 나급 월 2,206,300원 (세금 공제 전 1호봉 기준)
 - * 4대 보험 가입, 퇴직금 보장, 정액 급식비 등 수당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
- 계약기간 : 채용일 ~ 2023. 12. 31.
 - * 계약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 단위 재계약 가능
 - **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마다 호봉승급 적용
- 근무지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현지실사과

3.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

가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이력서, 채용지원서, 자기소개서)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- 최종 학력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
- 어학능력(성적)증명서 사본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) 1부
-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
나. 전형일정

○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기간

- 접수기간 : 2023. 6. 2. (금) ~ 2023. 6. 16. (금) 18:00

- 접수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www.mfds.go.kr/employ/index.do)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
*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>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> 지원하기

○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, 증명서·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야 함

- 접수기간에는 접수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

- 우수인재채용시스템 내 접수시 일부 특수문자 입력이 제한되며, 시스템에서 안내되는 주의사항에 맞추어 입력·접수하여야 함

-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처리됨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4. 시험방법 및 일정

시험방법	시험(예정)일자	시험장소	합격자 발표
서류전형	'23. 6. 20.(화)	-	개별통보 (유선, 문자)
면접시험	'23. 6. 26.(월)	식품의약품안전처(오송)	
최종발표	'23. 6. 28.(수)	-	

*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기타사항

-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기관(지역)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자격증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(☎ 043-719-62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